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19. 김문수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5. 11.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2.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2. 26.)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
(원안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3.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문수 의원)

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선거 4대 원칙, 선거구,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지난 2023년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감선거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영상등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개정안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 -----

[illegible]

현행	개정안
조, 제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선거원칙, 선거구,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규정¹⁾하면서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준용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²⁾.

□ 한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영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경우

1) 제6장 교육감선거(제43조부터 제50조의2까지)

2)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구체적으로, 2023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 목적으로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등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마련(2024년 1월 29일 시행)하였음³⁾.

3)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 1. 29.]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딤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규정]

구 분	내 용	위 반 시
딤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82조의8①)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 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 하여 <u>딤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금지</u>	- 제255조⑤(부정선거운동죄) 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딤페이크영상 등의 표시의무 (제82조의8②)	-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딤페 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 ·유포·상영 또는 게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 하여 만든 <u>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u>	- 제250조④(허위사실공표죄) ⁵⁾ 당선 되거나 되게 할 목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61조③(과태료) ⁶⁾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양벌규정 (제260조)	제250조④, 제255조⑤ 위반 시 행위자 외 단체도 벌금형 ⁷⁾	
재정신청 (제273조)	제250조④, 제255조⑤ 의 죄에 대하여 고발 시, 재정신청 가능 ⁸⁾	

4)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⑤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딤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딤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7) 제260조(양벌규정) ① 정당·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1조, 제232조제1항·제2항, 제235조, 제237조제1항·제5항, 제240조제1항, 제241조제1항, 제244조, 제245조제2항, 제246조제2항, 제247조제1항, 제248조제1항,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56조,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그런데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선거법」의 준용 규정으로 ‘딤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교육감선거의 경우 딤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및 제재규정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의 ‘딤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음.

□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달리⁹⁾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딤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및 제재규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공직선거 운영상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감선거도 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딤페이크영상 활용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제258조, 제25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273조(재정신청) 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 제255조제1항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및 제3항·제5항·제6항, 제257조 또는 제258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9)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제82조의7까지”를 “제82조의8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	① -----
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
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	-----
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	-----
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	-----
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	-----
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	-----
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	-----
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	-----
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	-----
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	-----
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	-----
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
<u>제82조의7까지</u> , 제85조, 제86조	<u>제82조의8까지</u> -----
(제2항제2호 단서·제3호 및	-----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	-----
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	-----
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	-----
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	-----

